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01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06일

3. 제안사유

-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등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과 유족 명칭을 구분 사용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등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의2)
- 나.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자살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 포함 (안 제6조, 제10조)
- 다. 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안 제9조제2항)
- (현행) 여성정책관 → (개정) 여성가족정책관
- 라. “자살자의 가족” 을 “자살자의 유족” 으로 변경
(안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마.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5조, 제20조)
- (현행) 자살예방지킴이 → (개정) 생명지킴이
- (현행) 자살유해정보 → (개정) 자살유발정보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률(2019년 기준,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을 보면, 충북의 자살률 24.6명으로 17개 광역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살예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 2020. 10 .8.)개정에 따라, 자살 관련 일부 용어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살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용어의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의2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살위험자”, “자살유발정보”, “생명지킴이” 등 주요 용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한 것임.
 - “자살유발정보”는 현행 “자살유해정보”로 사용하던 것을 법률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생명지킴이”는 현행 “자살예방지킴이”를 법률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용어의 통일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함.
- 안 제4조제2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9조에서는,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자의 유족”으로 개정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로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된 집단 또는 구성원을 뜻하며 “유족”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또는 친족을 뜻함

-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가족”은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구성원에 해당되는 용어로, “자살자의 가족”은 틀린 용어인 바, “자살자의 유족”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안 제6조제2항제7호는, 충청북도 자살예방 시생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규정 중,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9조는, 제1항의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개정함. 이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제2항제1호의 “여성정책관”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같은 항 제8호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5조 및 제20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자살유해정보”를 “자살유발정보⁶⁾”로, “자살예방지킴이”를 “생명지킴이⁷⁾”로 개정된 것임.
 - 이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 측면에서 타당함.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 2020. 10 .8.)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살 관련 일부 용어 정의조항 신설 및 개정과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살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행정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용어의 정확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